#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1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권명호·정희용·박대수

정진석・강민국・이철규

임이자 • 윤창현 • 김형동

정운천 · 이종성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각각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례마저 중단된다면 농·임·어업용 기계의 연료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소득 감소와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도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농어민 등을 위한 세제 혜택을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임·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 4년 12월 31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 ①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 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 (생 략) ② ~ ② (현행과 같음)